

농촌형 고령자 그룹홈의 사례와 제안

Design Planning of Group-Home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

남 윤 철*
Nam, Yun-Cheol

Abstract

The elderly rate in South Korea in 2015 is over 13.1%. Especially, the elderly rate in rural area is high. Senior community project in rural that is being promoted by the government. This study's purpose is to provide the reserch group-home for the elderly in Japan rural area. And this paper provided planning of group-home for the elderly in Korea rural area.

For this study, respective 5senior housing of Korea and Japan were chosen as respresenting two nations, and every manager was interviewed on housing pattern. This study suggests the planning material as following.

First, the effectiveness of the group-home are big. Especially, the elderly was far healthier. Design point is public space(living room, small living room, etc). Maybe, healthy group-home concept is that would be design by Korean traditional housing. Also important public space design is that would be inner courtyard-house, wood floor, Deachong, etc.

Two group-homes will construct elderly welfare facilities in between. Otherwise that is need layout of a big public space. In the case of vacant house can used by considering of scale, structure, site condition. Closed school can used through so easy remodeling too. More often than not complex type(hospital, community heath center) was appeared in Japan rural area. In the case of Korea, recommend complex type in community health center and public building. In this case, considering communication, access, contact, group-home keeps on ground floor.

In this paper, we hope to take a lesson from group-home planning source for the elderly in Korea rural area.

키워드 : 농촌, 고령자, 그룹홈, 계획안

Keywords : Rural Area, The Elderly, Group-Home, Design Planning

1. 서 론

적은 인원이 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물에서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을 갖추어 살고 있는 곳을 ‘그룹홈’이라고 부른다. 거주대상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이 있다. 대표적인 농촌의 고령자 그룹홈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공동생활홈(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이 여기에 해당된다. 용어에서 나타나듯 그룹홈은 노인에게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자택은 아니지만 채택의 환경’을 갖출 필요가 있다.

1.1 농촌지역내 그룹홈의 필요성

현재 2015년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은 660만명, 13.1%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인가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인만 사는 가구(노인부부+노인 1인)의 비율이 높은데 2015년 기준 고령자가구 20.6% 중 14.2%가 고령자만 산다. 2035년에는 고령자가구가 40%가 넘고 28.5%가 고령자만 살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¹⁾(Fig. 1). 또한 독거노인 가운데 40%가 넘는 200만 가구가 농어촌에 몰려 있어²⁾ 빈농, 소농이 많은 농촌 노인들

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노인복지환경구축을 위해 ‘농촌 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다. 공동시설에는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이 있다. 이 사업은 농촌노인들의 기본적인 주거환경과 더불어 사는 노후생활을 도모하는 동시에 보건·의료·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려고 한다.

가장 좋은 복지는 지역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복지’를 꼽고 있다. 또한 ‘Aging in Place’ 즉 자신이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 했다. 농촌의 노인들이 건강악화를 이유로 고향을 떠나 도시의 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없어야 지역복지의 실현이다.

1.2 일본의 치매형 고령자 그룹홈

일본의 대표적인 그룹홈은 ‘치매성 고령자 그룹홈’이다. 입소노인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치매질환이 있다. 일본은 초기에는 정신병원, 병원에서 치매노인을 담당했으나 가정이 아닌 낯선 시설에서는 치매증상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이에 1980년대부터 유림의 그

* 정희원,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교신저자:ycnam@jbm.ac.kr)
“이 논문은 2015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1) 통계청(http://kostat.go.kr), 2015 고령자 통계.

2) 조선일보, 부농 늘었지만 극빈농도 급증... 복지는 농촌이 더 절실, 2012. 3.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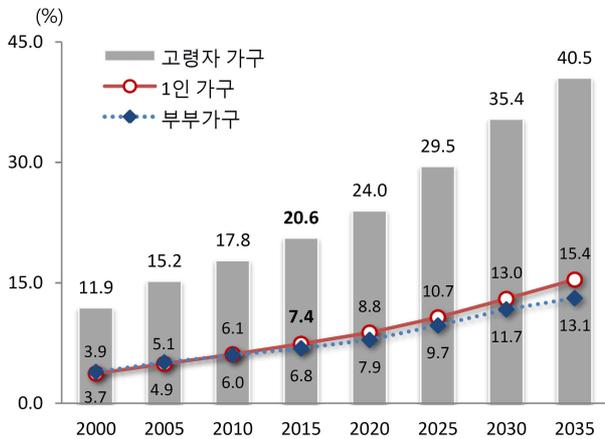


Fig 1. Trend of the Elderly Household
(출처 : 2015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15. 9)

그룹홈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소수의 가정같은 분위기에서 노인에게 치매증상에 맞춰 직원의 대처가 다양한 점이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2000년 개호보험시행 이후부터 그룹홈은 급증하였다. 특히 농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나타나게 된다.

다나카(中田)씨의 조사에 따르면³⁾ 기존 건물이 빈집이었던 비율이 42.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파트 혹은 기숙사가 31.4%였다. 빈집의 경우 증축은 필수적이었으며 방을 우선 증축하고 화장실과 욕실을 증축하였다. 민가를 활용한 경우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노인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배회가 적어지고 자립능력이 좋아졌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인 ‘가정’과 유사한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많다. 단지 소규모이기 때문에 개인이 설치 운영할 수 있어서 시설수가 급증한 반면 주거환경이 미비한 점도 많고 관리감독이 어려워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아쉬운 실정이다.

1.3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그룹홈의 모범사례를 고찰하고 농촌형 그룹홈의 평면을 제시하였다.

농촌의 노인들을 위해 자신이 살아온 고향에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농촌형 그룹홈’이 필요하며 사례 검토와 제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일본의 농촌 그룹홈과 국내사례를 살펴보았다. 사례와 전통민가 ㅁ자형의 평면을 기본틀로 농촌형 그룹홈의 기본 평면계획안과 병설 조합계획안을 제시하였다.

기대효과는 현재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농촌이 지역 곳곳에 작은 그룹홈이 생긴다면 지금껏 살아온 정든 마을을 떠나지 않고 집과 같은 그룹홈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시의 양적 복지환경(인프라)보다 더 나은 질적 복지환경, 즉 지역복지를 실현하고 ‘가정’이라는 거주환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1.4 연구의 내용과 방법, 범위

(1) 연구의 내용

- ① 그룹홈의 개요와 법적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 ② 일본 농촌 그룹홈의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계획요소를 고찰하였다.
- ③ 농촌형 그룹홈의 평면안을 제시하고 설치유형을 제안하였다.
- ④ 국내 농촌지역을 사례로 농촌형 그룹홈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2) 연구의 방법, 범위

연구의 방법은 문헌과 인터넷,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본의 그룹홈은 직원 인터뷰와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인터넷자료로 보완하였다.

충남과 경남에 설치된 2개의 그룹홈 리모델링 사례를 들었고 충남지역에 농촌형 그룹홈 설치계획을 제안하였다.

2. 그룹홈 고찰

원래 1960년대 스웨덴에서 지적 장애인시설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사회에서 격리되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수용시설로부터 지역사회속에서 소규모의 가정적인 주거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었다. 따라서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운영되었다.

한국에는 1992년에 본격적인 그룹홈의 형태가 등장하였다⁴⁾. 입소자는 정신지체 장애인들로 복지시설이 아닌 일반주택에 모여 생활하도록 하고 보통 부부와 함께 살며 한명은 생활보조인이 되고 나머지 한사람은 외부 직장을 다니는 형태였다.

이러한 그룹홈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 장애인은 물론 고령자, 소년소녀가장, 노숙자로 확대되었다. 각각의 그룹홈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2.1 고령자 그룹홈

우리나라에서 보통 고령자 그룹홈이라 불리우는, 즉 소규모 노인집단이 거주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다. 일본의 치매고령자 그룹홈과 유사하다.

둘째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마을회관 중심으로 마을의

- 4) 그룹홈의 전신은 이보다 앞선 1981년 천노엘신부가 집단가정 서비스를 최초로 시행하였고 1988년 은평천사원에서 제네바 소망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1922년부터 서울 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발단이 되었다.

3) 中田 梧岡, 田廣 司, 勝又 英明, 古民家の痴呆高齢者グループホームへの轉用について調査研究(고민가의 치매고령자그룹홈의 전용에 대한 조사연구), 日本建築學會關東支部報告集, 2002.

노인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형태가 있다. 주로 겨울철에 운영되는 데 대표적인 예로 전북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행복의 집’을 그룹홈으로 부르고 있다.

셋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3개 중 ‘공동생활홈’이 해당된다. 이 시설에는 3가지(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작은목욕탕)을 따로 혹은 함께 설치할 수 있다.

2.2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도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근거에 입각하여 보통주택에서 소수의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전문 지도교사는 미리 짜여진 프로그램에 따라 가족적인 환경 속에서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습득시키고, 장애 정도에 따라 개인의 잠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유럽등지에서는 1960년대부터 일반화되었으나, 한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되었다. 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그룹홈이 권장되고는 있지만, 활발하지는 않다. 그룹홈의 장점은 열등의식이 없어지고, 성격이 밝아지며, 여러 가지 능력이 향상되고, 부모나 형제들도 부담 없이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문제점으로는 개별화된 서비스 및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홍보와 지원기관, 전문인력 등의 부족과 운영시설의 제한성 등 지적하고 있다⁵⁾.

2.3 아동청소년 그룹홈

소년소녀가장과 학대, 방임 등의 가정불화로 아동, 청소년(0-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그룹홈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1997년에 소년소녀가장을 위해 도입한 것이 시초라 할 수 있으며 2014년 말 기준 62곳에서 333명이 넘는다. 전국적으로는 476개소에서 2,588명이 생활하고 있다⁶⁾. 그룹홈은 보호가 필요한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시설보호보다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명의 관리인과 아이들 4-5명을 모아 가족처럼 살게 한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하며 가족과 같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82.5㎡(약25평)이상의 주택형 숙소이다.

전국의 84개소 그룹홈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법인) 운영자의 헌신과 지역사회 후원금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3. 일본 그룹홈의 사례(꼬모레비노이에, こもればの家)

이 사례를 선정한 배경은 일본의 건축사조연구소에서 편찬한 ‘고령자그룹홈’의 ‘설계포인트’ 라는 부분에서 모범 사례로 언급하고 있고 연구자와 설계자가 선진사례로 다수 답사하고 설계방향에 참고하고 있다.

5) 두산백과(www.doopedia.co.kr)

6) 2015년 공동생활가정현황(2014. 12. 31 현재), 보건복지부

꼬모레비노이에는 미야기현(縣)나토리시(市)에 1997년 개설된 그룹홈이다. 이 그룹홈은 1996년 다른 곳에 있는 기존 민가에서 4명으로 시작했고 1997년 이곳으로 신축 확장하여 현재 9명 정원이다.

기존의 그룹홈은 식당, 부엌, 거실이 있고 그 주위를 개인방이 둘러싼 형태인 반면 꼬모레비노이에는 작은 공용공간을 집안 여기저기 분산시켜 노인의 다양한 생활행태에 대응한다. 다다미방, 이로리가 있는 거실, 다다미평상, 내부현관 등 기존 그룹홈에서 볼 수 없었던 작은 공용공간이 존재한다. 1997년 당시 이러한 새로운 타입의 그룹홈은 현재까지도 그룹홈 설계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고 한다⁷⁾(Fig 2).

4. 고령자 그룹홈의 법적 기준

여기서는 농촌형 고령자 그룹홈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따랐다.

4.1 그룹홈의 법과 제도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복지시설은 Fig. 3과 같다. 위의 4개 시설 이외에 노인보호전문기관(28개)을 포함하면 총 5가지이다. 팔호안의 숫자는 시설수와 이용자수로 2014년 말 기준이다⁸⁾. Fig 3과 같이 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로 나눌 수 있으며 노인 거주지에 따라 시설서비스와 재택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그룹홈은 노인공동생활가정(시설+복지(주거))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의료)이다. 노인복지법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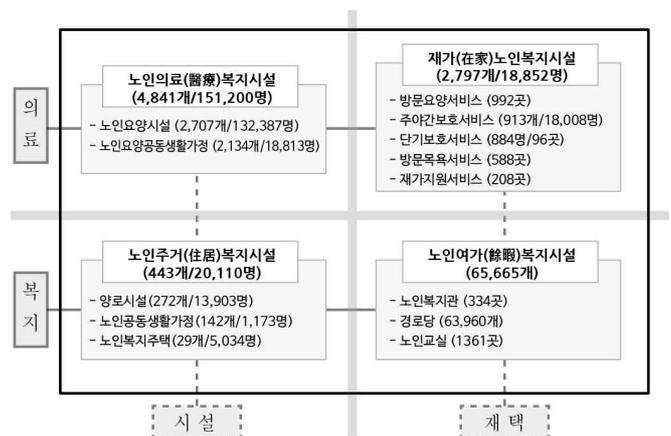


Fig 3. Diagram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7) 長野一生, グループホームの設計のポイント-限りなく住宅に近づけて空間を構成する(그룹홈의 설계 포인트 -주택에 가까운 공간을 구성하다-), NO 93. 高齢者のグループホーム, 建設資料研究社, p. 26, 2004.

8) 보건복지부, 2015 노인복지시설 현황(2014. 12. 31)



Fig 2. 고령자 그룹홈 '꼬모레비노이에'(こもればいの家)의 사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했다. 즉 2개 모두 노인들의 주택역할을 하는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노인성 질환에 대응하는 요양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본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longtermcare.or.kr)홈페이지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시설정보와 평가등급, 대기자수 등을 게재하고 있다. 보통 1인실에서 4인실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4인실 거주자가 많다(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Group-Home by Law

그룹홈 종류	내용	
노인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주거(住居)복지시설에 해당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32조 2항)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의료(醫療)복지시설에 해당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노인복지법 34조 2항) 	<p>a) A시설의 4인실 사례</p>  <p>b) B시설의 거실 사례</p>

출처 : 노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4.2 그룹홈의 설치기준

Table 2를 보면 2개 시설의 설비 기준은 대동소이하다. 의료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1인당 연면적이 약간 더 넓다(3.6㎡). 관리부분에 해당하는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간호사실로 나뉘지만 1개실로 통합이 가능하다. 식당 및 조리실은 둘 다 설치한다. 화장실의 경우 노인공동생활가정(주거개념)은 목욕실과는 별

Table 2. Group-Home guideline by Law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정원	5-9인(4인 이하/1실)	
연면적/1인	15.9㎡	20.5㎡
사무실 등	① 사무실. ②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③ 의료 및 간호사실. ※위의 3개실 통합가능.	
식당 및 조리실	설치	
화장실	별도 설치	① 화장실.
세면장 및 샤워실(목욕실) 등	① 세면장 및 샤워실. ② 세탁장 및 건조장. ※위의 2개실 통합가능.	② 세면장 및 샤워실. ③ 세탁장 및 건조장. ※위의 3개실 통합가능.

출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도로 설치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목욕실과 겸용할 수 있다(Table 2).

5. 농촌형 그룹홈의 계획안

농촌형 그룹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몸이 불편하더라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만약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농촌형 그룹홈이 생긴다면 그룹홈에 입소하여 자택이 아니더라도 마을안에서 오랜 지인들과 어울리며 살 수 있다.

5.1 농촌형 그룹홈의 평면 계획안

그룹홈 유니트(주생활공간)의 구성방식에서 최유신(1998)은 크게 일자형, 알코브형, 날개형, 중앙홀형, 중정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중앙홀형과 중정형이 많이 쓰이는데 중앙홀형은 치매노인에게 편리한 평면형으로 오픈된 공간 내 어느 곳에서든 자신의 위치를 확인가능하여 치료적 환경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⁹⁾ 중정형과 중앙홀형과 유사한 평면을 우선 고려하는데 전통민가 口자형이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Fig 4는 전통민가 중 공간의 확대 형태인 口자형을 기본틀로 하였고 일본의 사례와 기존 문헌들을¹⁰⁾ 참고하여 계획하였다.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기준을 만족하는 최소한의 실을 배치하였다. 농촌의 빈집을 활용할 경우에 아래 유형을 참고하여 증축이 가능하다. 각 공간에 대한 설명은 그림 하단에 기술하였다.

5.2 그룹홈의 설치 유형

여기서 제안한 그룹홈의 설치형태는 김명희(2008)와 일본 야마이(山井, 2003)가 제안한 독립형, 클러스터형, 병설형, 합축형 등 4개로 하였다. 인구수가 적은 농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경우 독립형과 병설형 설치가 많을 것이다(Table 3).

(1) 독립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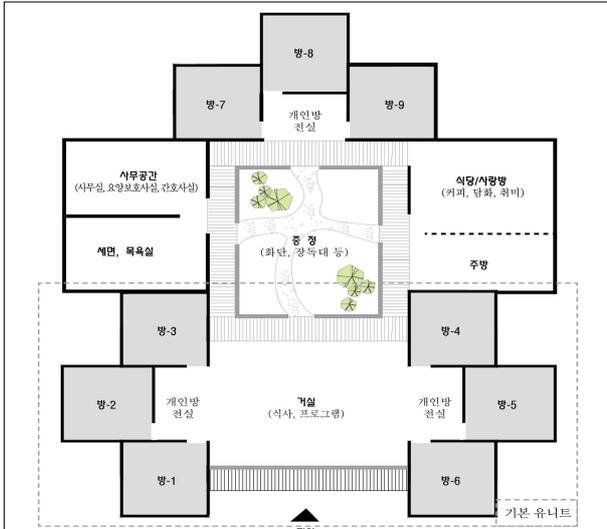
독립형의 형태로 본 고에서는 신축형, 빈집 활용형, 폐교 활용형을 사례로 들었다.

① 신축형

신축을 한다면 가능한 마을 민가들과 가까워 마을의 지인들과 접촉이 용이한 마을 중심부를 우선 선정한다. Fig 4와 같이 민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口자형인 중정형을 우선 고

9) 최유신, 치매병원 병동부 공용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p. 21, 1998.

10) 임수현, 이연숙, 장미선, 장계한, 지속가능 건강사회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가든 인접형 치매노인주거 계획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0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2), p. 32. 남윤철, 박경옥, 시설간 연계를 고려한 농촌지역 노인복합시설의 계획 -국내와 일본의 노인복합시설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3), p. 94, 2010.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비 기준에 기초하여 필요설비로 설명하였다.

- ① 방 : 개인방을 기본으로 총 9개 방(3명*3곳)을 계획. 본인이 사용할 가구, 액자, 소품 등을 놓을 수 있게 배려. 방안에는 번기와 세면기가 설치된 작은 화장실을 설치(노인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건강상태·니즈에 따라 환자용 침대 또는 좌석을 적절히 설치.
- ② 개인방 전실 : 사적 공간의 매개역할을 담당. 자기방 앞에서 2-3명이 앉아서 담소를 나눌 수 있도록 배려.
- ③ 거실 : 민가분위기상 대청에 해당. 평상시에는 노인들이 모여 앉는 거실역할을 하고 식사,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함.
- ④ 복도 : 마루바닥으로 노인이 배회할 수 있도록 회랑식으로 계획. 모든 실로 연결.
- ⑤ 중정 : 안마당 역할을 담당. 4군데서 출입이 가능. 공격공간에서 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며 창을 두어 항상 중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함. 내부에는 휴식용 벤치를 두고 소일할 수 있는 화단을 설치.
- ⑥ 세면, 목욕실 : 욕조가 미비되어 샤워만 하는 곳이 있는데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거동이 불편한 노인인 경우 특수욕조가 효과적일 것임. 세탁물 건조를 위해 중정과 연계 고려할 것.
- ⑦ 사무공간 : 사무실,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로 겸용. 목욕실과 인접하여 목욕지원이 용이함.
- ⑧ 식당/사랑방 : 건물 중간부분에 식당을 두고 사랑방과 접이문을 설치. 직원은 사랑방의 노인들을 관찰하거나 접촉이 용이하게 함.
- ⑨ 공동사향 : 실내는 나무·한지 등으로 전통민가의 분위기를 줌. 바닥은 문턱을 없애고 복도에 안전손잡이를 설치. 필요장소에 따라 실버용품 구비.

Fig 4. Group-Home Planning in Rural Area

려하면 정원을 둔 중정을 끼고 넓은 내부가 한 눈에 들어올 것이며 배회할 수 있는 회랑식 복도도 가능해진다(Fig 4). 민가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건축적 요소로 마당(중정), 장독대, 화단, 툇마루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그룹홈을 2개 이상 설치한다면 Fig 5와 같이 중간에 재가노인복지시설 혹은 넓은 공용공간을 두고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고려한다.

② 빈집 활용형 (제한)

현재 농촌지역에는 빈집이 증가하고 있어 귀촌귀농자가 이를 매입하여 고쳐쓰는 경우가 많다. 빈집중에는 꽤 넓은 집도 있으며 이러한 집은 보통 기와집에 비교적 잘 지어져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므로 보수보강으로 충

Table 3. Application Type of Group-Home Planning

구분	내용
독립형	대지내에 그룹홈 단독건물인 경우로 집의 개념이 가장 충실히 반영함.
클러스터형	한 건물안에 여러 개의 그룹홈을 두고 연결통로 혹은 공용공간으로 연결된 형태.
병설형	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특히 방문요양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병설되는 경우
합축형	빌딩이나 아파트의 한 층에 설치하는 경우

출처 : 김명희, 정기남, 김귀자, 치매노인을 위한 그룹홈의 공간적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4(6), 2008.6을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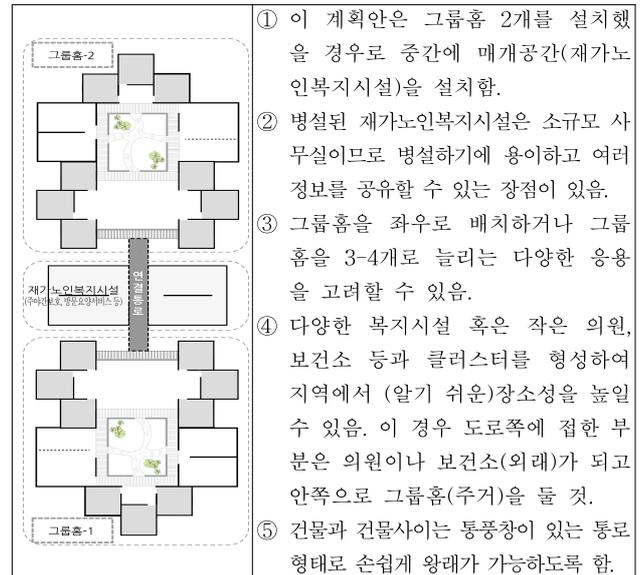


Fig 5. Application of 2 Group-Home Planning

분히 사용가능하다.

Fig 6은 충남 아산시 도고면 시전리에 있는 빈집 2개를 계획사례로 들었다. 오랫동안 독거노인 할머니가 사시다가 돌아가신 10여 년 전부터 빈집이 되었다. 빈집이 된 이후 자손들이 1년에 몇 차례씩 내려와 관리하고 있다. 2집 모두 꽤 잘 지어진 기와집으로 구조적으로 튼튼한 편이며 넓은



Fig 6. Remodeling Case of an Empty House (Asan-city)

내부공간과 마당을 갖고 있어 그룹홈으로 활용이 충분하다.

그림에서 위쪽 집은 마을회관과 근접하여 마을주민, 노인들과 교류가능한 장점이 있고 마을회관쪽으로 확장 및 연결통로 설치도 용이하다.

그림에서 아래쪽 집은 마을 중심부에 있으며 길에서 좀 떨어져 한적한 편이다. 뒷산으로 연결된 산책로는 소나무 들레길로 경사가 없어 노인들의 산책로 최적이다. 이 집의 할머니는 치매에 걸렸는데 개인요양사를 고용하여 그 집에 계속 살았다. 정신이 들 때에는 매일 마을을 산책하며 지인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리고 돌아가셨다(Fig 6).

③ 초등학교 활용형 (실례)

경남 의령군의 S노인요양원은 폐교된 초등학교를 노인요양원으로 활용한 사례이다¹¹⁾. 대부분 농촌지역의 초등학교로 2015년 현재 미활용으로 방치된 폐교가 406개가 있다¹²⁾. 방치된 폐교를 그룹홈으로 활용한다면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Fig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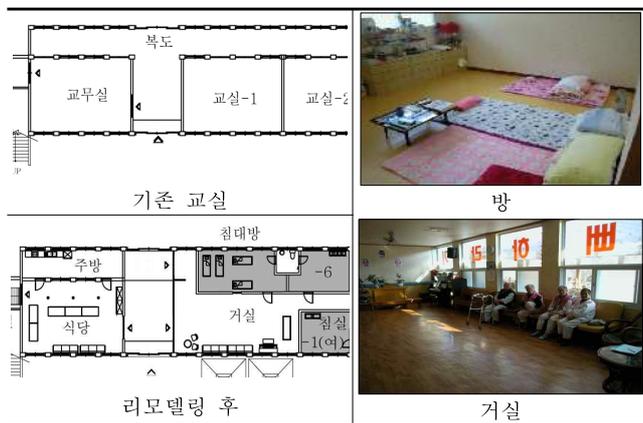


Fig 7. Remodeling of Closed School

(2) 클러스터형

클러스터형은 비교적 인구가 많은 지역에 몇 개의 그룹홈을 설치한 경우이다. 위의 Fig 5처럼 몇 개의 그룹홈을 설치하고 이를 연결통로, 공용공간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 등 사무실 중심의 시설과 연결된 형태이다. 농촌지역에서는 노인인구가 많은 면소재지 등지에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3) 병설형 (제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와 4의 시설기준에는 '시설의 장은 시설의 개방성을 높여 외부사회와의 단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재가복지시설을 병설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다. 또한 일본 농촌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지자체병원, 보건소, 복지시설이 한 곳에 병설하여 상호 긴밀한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곳은 공공교통의

11) 이우구, 남윤철,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사례와 평면유형 개발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곡초교를 대상으로-,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 학회 Vol. 20호(제 10권 3호), p.p. 39~46, 2010. 12. 26.

12) '미활용 방치 폐교 전남 147곳 최다', 한겨레 신문 2015. 9. 14일자(www.hani.co.kr/arti/society/area/708834.html)

발착지 기능도 하면서 행정기관과도 병설되는 경우도 있어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¹³⁾.

병설시설로는 지역고령자공동시설(농림축산식품부) 혹은 공공시설·의료시설(면사무소, 보건소, 마을회관, 복지관 등)를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아래는 아산시 도고면의 면소재지 지역으로 도고면사무소, 보건소와의 병설 사례이다(Fig 8).



Fig 8. Group-Home Contiguous with Public Facilities (Asan-City)

(4) 합축형 (실례)

도시에 비해 건물이 적은 농촌에서는 합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적을 것이다. 농촌에서 합축가능하고 적절한 건물로는 마을회관을 꼽을 수 있다. 근래 마을회관을 신축한 사례도 다수 있어 방치된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도 있다.

논산시 양촌면 모촌리 마을회관은 2층이다. 시에서 2층을 그룹홈으로 리모델링해주었으나 노인들은 계단을 올라가기 어려워 1층으로 옮겼다. 현재 1층에서 마을회관과 그룹홈을 겸용하고 있다(Fig 9).



-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은 단층이나 이 곳은 2층으로 그룹홈으로 합축 가능한 지역사례임.
- 논산시에서 지원한 행복의 집(그룹홈)으로 2층에 설치하였으나 계단이 불편하여 1층에 8명(2012년 겨울) 생활함.

Fig 9. Group-Home Complex at Mochonmeon Office (Nonsan-City)

13) 남윤철, 일본의 고령자 보건, 의료, 복지시설의 집약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 227(제23권 9호), p.p. 15~22. 2007. 9

5. 결론

농촌노인들이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정든 집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농촌 고령자 그룹홈의 사례와 계획방향을 알아보았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나카(中田)씨의 조사결과 입소노인에게 있어 그룹홈은 거주만족도가 높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민가를 활용한 경우 정신적으로 안정되어 표정이 밝아지고 자립능력이 좋아졌다고 했다.

둘째, 일본의 민가를 활용한 그룹홈 꼬모레비노이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기존 그룹홈에 없는 작은 공용공간(다다미방, 이로리, 다다미평상, 내부현관)을 두었으며 노인들의 다양한 생활패턴을 담을 수 있었다.

셋째, 위의 모범사례와 우리의 전통민가 口자형을 토대로 중정형 그룹홈 평면안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노인들은 아파트보다 전통민가에 익숙한 만큼 안마당(중정)이 있고 대청(거실)이 있는 평면형태를 우선 고려한다.

넷째, 2개 이상 그룹홈 설치시 매개역할을 하는 공용공간 혹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고려한다.

다섯째, 폐교를 활용한 사례는 비교적 용이한 리모델링이 가능했다(의령군 사례). 한 건물에 합축하는 경우 마을회관(2층인 경우) 1층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논산시 사례) 빈 마을회관이 있어 활용한다면 주민과의 공동체형성에 유리하다. 양질의 빈집을 선정하여 증축하거나 면사무소, 보건소 등과 병설도 고려한다(아산시 계획사례).

참 고 문 헌

1. 임수현, 이연숙, 장미선, 장계한, 지속가능 건강사회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가든 인접형 치매노인주거 계획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10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2), p. 32.
2. 최유신, 치매병원 병동부 공용생활공간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p. 21, 1998.
3. 이웅구, 남윤철, 폐교를 활용한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 사례와 평면유형 개발 -경남 의령군 대의면 천곡초교를 대상으로-, 한국 디지털 건축·인테리어 학회 Vol. 20호(제 10권 3호), pp. 39~46, 2010. 12. 26.
4. 남윤철, 박경옥, 시설간 연계를 고려한 농촌지역 노인복합시설의 계획 -국내와 일본의 노인복합시설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6(3), p. 94, 2010. 3.
5. 남윤철, 일본의 고령자 보건, 의료, 복지시설의 집약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 227(제23권 9호), pp. 15~22, 2007. 9
6. 長野一生, グループホームの設計のポイント-限りなく住宅に近づけて空間を構成する(그룹홈의 설계 포인트 -주택에 가까운 공간을 구성하다-), NO 93. 高齢者のグループホーム, 建設資料研究社, p. 26, 2004.
7. 中田 悟岡, 田廣 司, 勝又 英明, 古民家の痴呆高齢者グループホームへの転用について調査研究(고민가의 치매고령자그룹홈의 전용에 대한 조사연구), 日本建築學會關東支部報告集, 2002.
8. 보건복지부, 2015년 공동생활가정현황(2014. 12. 31)
9. 조선일보, 부농 늘었지만 극빈농도 급증... 복지는 농촌이 더 절실, 2012. 3. 19일자
10. '미활용 방치 폐교 전남 147곳 최다', 한겨레 신문 2015. 9. 14일자(www.hani.co.kr/arti/society/area/708834.html)
11. 2015년 공동생활가정현황(2014. 12. 31 현재), 보건복지부
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3. 통계청(http://kostat.go.kr), 2015 고령자 통계.
14. 두산백과(www.doopedia.co.kr)

접 수 일 자 : 2015. 10. 10

심사완료일자 : 2015. 11. 20

게재확정일자 : 2015. 11. 23